의 안 번 호	제120호
의결 연월일	2020. 10. 21.

논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0월 13일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0년 10월 13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0년 10월 21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참여예산실장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 신설규정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

○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논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제정 목적(안 제1조)

○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 운용(안 제2조)

○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(안 제3조~제9조)

○ 기금의 관리·운용방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정함.(안 제10조~제12조)

○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. 12. 31.까지로 정함(안 제16조)

○ 기금의 시행일은 2021. 1. 8.부터 시행함(안 부칙 제1조)

○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「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폐지한다(안 부칙 제2조)

○ 「논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성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승계하는 부칙을 정함.(안 부칙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